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심판 재결서 열람·복사 및 제한 사유 규정〉

■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40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행정심판 재결서 열람·복사 및 제한 사유 규정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12. 10.
3. 회부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제5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행정심판 재결서 열람·복사 및 제한 사유 규정

- 개정안은 누구든지 권리나 이익의 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되,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재결서</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③ (생략) <u><신설></u>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재결서(이하 “재결서”라 한다)</u> -----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51조의2(재결서의 열람·복사)</u> ① <u>누구든지 권리나 이익의 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위원회에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열람·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u>

1. 재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기재된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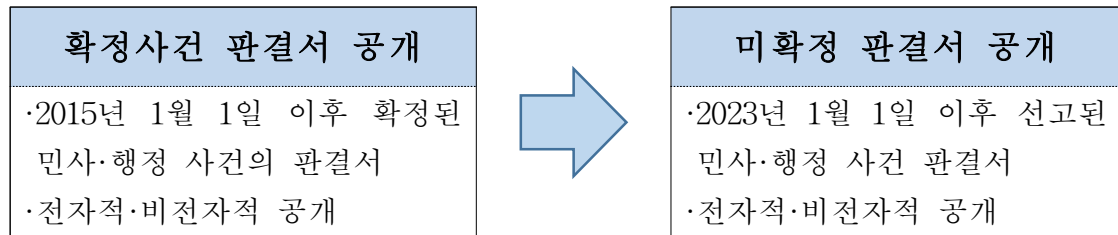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u>재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u>제1항에 따라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u> ⑥ <u>제1항에 따른 재결서의 열람·복사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¹⁾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보다 부응할 수 있도록, 미확정판결서라도 당사자 등의 비밀보호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누구든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1)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 「민사소송법」 상 민사·행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 추진 경과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하여 열람 가능

□ 반면, 현행법은 당사자(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을 포함)나 심판참가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³⁾을 두고 있는 것 외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에 대한 공개 범위나 비공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

- 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3)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청구를 통하여 재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야 함.

- 각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고, 공개된 재결서는 누구든지 열람·출력할 수 있으나,⁴⁾ 재결서의 공개 여부나 기준이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고, 공개되고 있는 재결서도 일부에 불과한 상황임.

[표 2] 행정심판 재결서 공개 현황

구분	2024년 재결서 등록 건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38건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교정·검찰 행정심판위원회(10개)	54건
시·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17개)	137건
시·도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17개)	70건

*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EASY행정심판)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재결서에 한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복사 규정에 준하여 당사자 등의 비밀보호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권리나 이익의 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개재판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09조의 취지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 및 행정소송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 등 유사 사례 등을 고려

4) 온라인 행정심판 내 EASY행정심판에서 재결례 검색 가능(<https://www.simpan.go.kr/nsph/easyIndex.do>)

할 때 누구든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의 취지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하려는 것으로, 행정심판이 법원에 의한 재판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⁵⁾되도록 하는 의미 또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재결서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재결서 열람이 용이해지고 공개의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다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예비 청구인이 유사 사건의 재결서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⁶⁾ 행정소송의 미확정 판결서도 검색어 검색 등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행정소송의 판결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③ 재판의 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6)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현행법하에서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행정심판 재결서의 공개청구가 가능한데,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행정심판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⁷⁾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열람·복사의 신청 목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열람·복사의 신청권자에게 “권리나 이익의 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공개 받으려는 다른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⁸⁾ 개정안이 정보공개법보다 오히려 신청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요구하지만, 판결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과 같이 개정안의 제51조의2제1항에서 열람 목적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등 참조).

8) **정보공개법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표 2] 「민사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기록·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

구분	소송기록 열람·복사	판결서 열람·복사
근거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신청권자	누구든지 +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	누구든지
신청 대상	확정사건의 소송기록(판결서 포함)	판결서(미확정 사건 포함)
제한 사유	변론 공개금지 사건, 소송관계인 비동의, 비밀보호(제163조제1항)	변론 공개금지 사건, 비밀보호(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반면, 개정안은 열람·복사의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및 「민사소송법」상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 제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재결서 공개 범위가 판결서 열람 범위 또는 정보공개 범위보다 광범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청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다소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 개정안도 「민사소송법」이 규정¹⁰⁾하는 바와 같이 재결서를 열람·복사한 자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당사자나

9) 제21대국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864호) 검토보고 중 감사원 의견 등.

10)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④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열람·복사의 제한 사유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민사소송법」, 「민사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개정안의 열람 제한 사유와 각 법률의 비공개 사유 등 비교

개정안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	비고
(안 제51조제1항제1호)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	(헌법)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규칙)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
(안 제51조제1항제2호) 당사자나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민사소송법 및 규칙)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 ,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정보공개법)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정보공개법)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그 밖에, 「민사소송법」 등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¹¹⁾ 개정안에도 이에 준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일부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비상설로 운영되거나, 행정심판 운영업무 담당자가 타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재결서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처리, 재결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재결서 공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EASY행정심판)을 통하여 일부 재결서를 공개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에 행정심판 재결레 데이터 개방·확대 및 맞춤형 사례 제공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결서 공개 확대 방안으로는 개정안과 같은 열람·복사 신청 방식 이외에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공개되는 재결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색어를 통한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1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현행과 동일하므로 개정안의 내용만으로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일률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내용을 중복으로 두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구광역시, 현재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재결서 열람이 가능하고, 과도한 열람 신청 등으로 위원회 직원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2

